

- 기존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건축구조에 있어서 건축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정착 구조도면 작성에 책임이 없기에 계약상 하도급자의 갑을 관계에서 도서작성에 구조안전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철근누락사고의 원인은 설계감리과정에서의 비리와 로비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최근 발생한 철근누락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속칭 '건설카르텔' 이라고 하는 시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건설사의 횡포로 감리과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는것을 알고 있음에도, 계약상의 갑을관계와 책임소재가 없는것을 이유로 현상황을 방조할수 밖에없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 본 제도 개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 문제가 되었던 철근누락사고는 실질적으로 대형 건설사의 시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책임소재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넘어간다고 한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모두 계약상의 갑을관계에서 을의 위치에서 구조안전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건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제도는 최근 문제가 되는 철근누락사고의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될수 없으며, 본 제도가 추구하는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에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 그렇다면 다른방안이 있는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공사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저가수주경쟁이 이루어지는 현 시스템을 손볼필요가 있다. 발주자와 시공사만의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사무소와의 독립적인 계약을 보장해주어야한다. 이는 시공사의 권한 감소로 기존 대형 건설사의 횡포로 인한 사고를 막을수 있으며, 또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역시 시공사 하청의 저가수주경쟁에서 벗어나 높은 수준의 설계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구조기술사 역시 건축사의 설계의도 구현에 있어 긍정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계약형태가 가지는 업무효율 및 공기단축과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보장 사이에서 어느정도 절충이 가능하다. 구조도면 작성의 책임소재가 설계사무소의 건축사에게 있기에 위와 같은 책임소재에 걸맞는 권한을 제공한다면 본 제도가 추구하는 '건설카르텔 혁파'에 직접적인 해결방안이 될수 있다.